

『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5년 1월 2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시민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연합회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합동순찰, 합동캠페인,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,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시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

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인천광역시 자율방범대”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인천광역시 지역 내 각 군·구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.
2. “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”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란 인천광역시 군·구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에 적용한다.

제4조(연합회) ① 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 하여야 하며,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연합회는 합동순찰, 합동캠페인,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,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) ① 시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법대와 모범대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 계 법 령

[자원봉사활동 기본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2. 지역사회 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에 관한 활동
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6.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7.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8.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9.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
10.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
11.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13.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
14.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제정안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
 -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,000천원을 지원, 매년 비슷한 예산 소요가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해당
 - 연평균 1억 미만 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으로 추가적인 예산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4. 작 성 자

-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